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0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김교흥・이성만・정일영

김병욱・허종식・박영순

김회재・한병도・유동수

문진석 · 김영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하여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및 제6조).

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아파트"를 각각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5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	
득하여 임대하는 <u>민간임대주</u>	민간임대주택[아파
<u>택(아파트</u> 를 임대하는 민간매	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입임대주택은 <u>제외한다)</u> 을 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
한다.	<u>을 말한다)</u> <u>제외한다]</u>
6. 삭 제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11
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이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 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생략)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
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
<u>닌 것을 말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5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
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u> 것을 말한다)</u>
⑥ (현행과 같음)